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48
----------	-------

발의연월일 : 2025. 9. 29.

발 의 자 : 진성준 · 모경중 · 어기구
문정복 · 이정문 · 김태년
박홍배 · 이용우 · 황명선
서영석 · 임오경 · 조정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착용하거나 소지’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표지물, 소품 등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규제됨에 따라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노상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지물, 피켓 등 소품을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소품 등을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

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 및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1항제5호 중 “착용하거나 소지하여”를 “착용·소지하거나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지니고”를 “지니거나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니고”를 “지니거나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u>착용하거나 소지하여</u> 내보이는 행위	5. ----- ----- ----- <u>착용·소지하거나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 ----- ----- ----- ----- ----- ----- ----- ----- ----- -----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붙이거나 입거나 <u>지니고</u>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u>지니고</u>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 ----- ----- ----- ----- -----<u>지니거나 가까운</u> <u>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u>-----. ② ----- ----- ----- ----- ----- -----<u>지니거나</u> <u>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u> <u>고</u>-----. ③ (현행과 같음)
---	---